

울산지방노동위원회

박정훈, 김동윤, 선연우



차 례

노동위원회 개요

노동위원회 조직

노동위원회 주요업무

울산지방노동위원회



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으로 2017년에 설립,
남구 두왕로 318 4층에 위치하고 있다.

노동위원회 개요

< 노동위원회 성격 > 교재 p655

- › 근로자위원, 사용자위원,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
- ›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

< 노동위원회 기능 >

- › 노동쟁의의 조정
- ›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
- ›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
- ›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
- › 정책적 업무

노동위원회 조직

< 위원회 종류 > 교재 p656

- › 중앙노동위원회 (고용노동부 장관 소속)
- › 지방노동위원회 (고용노동부 장관 소속)
- › 특별노동위원회 (해당사항 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)

< 위원회 구성 > 교재 p657

- › 근로자위원·사용자 위원 10~50인, 공익위원 10~70인
- › 각급 노동위원회별 위원정원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으로 규정

노동위원회 조직

› 위원의 위촉 교재 p658

-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,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,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
-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·노동조합·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, 위촉 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,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

노동위원회 조직

› 임 기 : 3년(연임가능) 교재 p659

› 위원장

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

› 상임위원

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

노동위원회 주요업무

< 조정 >

- › 노사간의 임금·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
- ›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
- › ※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

노동위원회 주요업무

< 중재 >

- ›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,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 할 수 있음.
- › 중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
- › ※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

노동위원회 주요업무

< 필수유지업무 결정 >

- › 필수공익사업장의 노·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, 대상 직무, 필요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, 노·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
- › 노동위원회에서 사업(장)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·운영 수준,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

노동위원회 주요업무

< 긴급조정 >

- ›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
- › 긴급조정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
- › 이 기간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

노동위원회 주요업무

< 복수노조 관련 업무 >

› 교섭창구 단일화

-하나의 사업(장)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조 결정

› 교섭단위 분리

-하나의 사업(장)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위의 결정으로

-교섭단위 분리

› 공정대표 의무

-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할 의무

노동위원회 주요업무

<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> **교재 p599**

› 신청대상 : 부당해고, 부당한 휴직`정직`전직`감봉 기타 징벌

부당노동행위(불이익취급, 불공정한 고용계약,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,
노동조합 지배 개입)

› 신청기간 :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

› 판정 불복 시 재심신청 :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)

노동위원회 주요업무

<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 >

- ›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(기간제·단시간·파견근로자)가 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보
- ›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

노동위원회 업무

< 정책적 업무 >

- › 노동위원회규칙 제정권
- › 지시권
- ›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

노동위원회 입직 방법

- › 1.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정직 시험 응시(9급, 7급)
- › 2. 고용노동부 소속기관(고용노동청, 고용센터, 노동위원회) 중 노동위원회에 배치
- › 3. 시험과목
 - 9급(고용노동) 시험과목
필수 : 국어, 영어, 한국사
선택(2) : 노동법개론,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
 - › - 7급(고용노동) 시험과목
필수 : 국어(한문 포함), 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 한국사, 헌법, 노동법, 행정법, 경제학

2019년 국가 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합격선, 최종합격자 및 여성비율

구분	선발 예정인원	출원인원	응시인원	합격선	필기 합격인원	추가합격 (면접미달)	최종 합격인원	여성 합격인원	여성 비율(%)
행정(고용노동:일반)	273	6,120	4,921	388.88	407	0	274	192	70.1
행정(고용노동:장애인)	22	233	190	271.76	33	0	22	8	36.4
행정(고용노동:저소득)	8	119	92	350.86	12	0	8	3	37.5

2019년 7급 공채시험 필기시험 합격선 및 최종합격자 여성 비율

직렬	선발 예정인원	출원인원	응시인원	합격선	필기 합격인원	최종 합격인원	여성 합격인원	여성 비율(%)
행정(고용노동:일반)	109	1,100	805	71.66 (지방)71.33 (양성)70.50	136	120	33	27.5
행정(고용노동:장애인)	8	52	27	50	4	4	0	0

감 사 합 니 다